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479
----------	-------

발의연월일 : 2024. 2. 1.

발 의 자 : 강민정 · 홍기원 · 허숙정
김용민 · 민형배 · 황 희
임종성 · 양이원영 · 민병덕
이병훈 · 김영주 · 이용빈
정태호 · 이수진^(비) · 황운하
김상희 · 설 훈 · 이원택
박찬대 의원(1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제5조의3)을 두어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해당 개정안이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통과됨.

특별교부금은 교육청의 자율적 예산집행이 아닌 중앙정부가 목적을 특정해 집행되는 예산임. 이러한 예산구조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오랜 문제제기 끝에 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4%였던 특별

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됨. 그런데 5년 만에 이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에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자치의 훼손과 교육재정 위기의 가속화가 우려됨.

2023년 1월 1일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천억원을 고등·평생교육 몫으로 떼어갔고, 올해 59조에 달하는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6조 9천억원이나 적게 편성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이미 대대적인 교육활동 사업 축소에 나섰음. 이러한 교육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5,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별도로 떼어내 교원 AI 연수 및 AI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의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에서 필요한만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해야 함. 또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면 될 것임.

교육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전환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삭제)

주요내용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
함(안 제5조의3 삭제).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u> <u>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u> <u>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u>	<u><삭 제></u>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
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

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
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
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
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
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
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

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
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
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
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

<u>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u> <u>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u> <u>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u> <u>있는 때</u> <u>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u> <u>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u> <u>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u> <u>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u> <u>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u> <u>요한 때</u> ③ <u>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u> <u>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u> <u>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u> <u>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u> <u>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u> <u>효력을 가진다.</u>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	--